

「개인정보 보호법」 상
데이터 이동권 및 프로파일링 관련
권리의 도입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IT·정보보호법 전공

임 용 현

「개인정보 보호법」 상
데이터 이동권 및 프로파일링 관련
권리의 도입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오 병 철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7월 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IT·정보보호법 전공

임 용 현

임용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이 병찬 

심사위원 최 난 설령 

심사위원 김 남 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20년 6월 30일

감사의 글

공직에 입문한 뒤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깊이 있는 학문연구를 통한 이론적 배경 학습이 부족한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을 채우고 자기 계발을 통해 한단계 더 성장하고 싶어 대학원 입학에 결심하였고 훌륭한 교수님들, 원우님들을 만남으로써 지난 2년간 소중한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대학원 생활 및 논문 작성 등으로 많은 시간 육아를 함께하지 못했음에도 묵묵히 내조에 힘써준 사랑하는 아내 문혜인, 늘 매순간 기쁨과 행복만 주는 아들 준서,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며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새없이 바쁜 업무 중에도 원활한 대학원 생활을 가능하게 해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병남 조사과장님, 원세연 서기관님, 김민철 사무관님을 포함한 모든 조사과 직원분들의 배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족한 논문을 꼼꼼하게 지도해주신 연세대학교 오병철 교수님, 학부시절 법학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신 이호규 교수님께도 지면을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석사학위 논문은 대학원 석사과정의 마침표이자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더 나은 공직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표/그림 목차	iii
국문 요약	iv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방법	3
제2장 데이터이동권	4
제1절 개념 및 의의	4
제2절 비교법적 분석	7
I. EU GDPR	7
II. 영국	8
III. 프랑스	10
IV. 독일	11
V. 미국	12
VI. 일본	14
VII. 우리나라	16
제3절 평가	27
제3장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권리	31
제1절 개념 및 의의	31
제2절 비교법적 분석	34
I. EU GDPR	34

II. 영국	37
III. 프랑스	37
IV. 독일	38
V. 미국	39
VI. 일본	41
VII. 우리나라	42
제3절 평가	47
제4장 데이터 이동권 및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권리의 도입 방안	49
제1절 데이터 이동권	49
I. 도입 필요성	49
II. 일반법 규율방안	50
III. 개별법 규율방안	53
제2절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권리	60
I. 도입 필요성	60
II. 일반법 규율방안	62
III. 개별법 규율방안	63
제3절 소결	68
제5장 결론	72
참고문헌	74
ABSTRACT	78

표 목차

<표 1> 2020년 본인정보 활용지원(MyData) 실증서비스 선정 과제 목록	18
<표 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관련 신설 조문	21
<표 3>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관련 신설 조문	43
<표 4> 프로파일링 관련 국내·외 입법례	47
<표 5> 프로파일링 유형별 사례	64
<표 6> 신·구조문 대조표	69

그림 목차

<그림 1> MiData 체계도	9
<그림 2> 레인보우버튼 프레임워크 공통 시나리오 설계 예시	11
<그림 3> 스마트공시 제도	12
<그림 4> 블루버튼을 활용한 민간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도	13
<그림 5> PLR 모델	15
<그림 6> 이용자, 소프트웨어 공급자, 스토리지 제공자의 역할	15
<그림 7> 후지쯔 기업의 지역 PDS 시범 사업	16
<그림 8> 마이데이터 개요	17
<그림 9> 데이터 이동권 및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체계도	29
<그림 10> 프로파일링 진행 단계	32
<그림 11> 개인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의사	66
<그림 12>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인지 여부	67

국문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상 데이터 이동권 및 프로파일링 관련 권리의 도입에 대한 연구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 및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와 균형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EU GDPR에서 신설한 데이터 이동권과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를 우리나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데이터 이동권과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의 도입 배경 및 입법 취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한 후 국내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는 데이터 이동권과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를 법제화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데이터 산업 발전과 함께 구체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개정되어 8월 시행 예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데이터 이동권과 유사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와 유사한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신설하여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도모하는 법제를 마련하였다는 평가와 더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특성,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데이터 이동권과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살피건대, 데이터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의 문제, 데이터 이동 체계 구축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법제 특성을 고려하면 데이터 이동권은 우선 개별 분야에 도입한 후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를 위한 보호 수단 마련도 중요하지만 프로파일링 관련 권리의 도입이 프로파일링 관련 산업이 가져올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감소시키고 해당 산업 육성을 위축시키는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데이터 이동권과 마찬가지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 역시 우선 개별 분야에 도입한 후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고려하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데이터 이동권과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핵심되는 말 : EU GDPR,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데이터 이동권,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EU에서는 대규모 미국 인터넷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 및 시장 점유율 증대로 인하여 EU 역내의 데이터 주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EU 역내 데이터의 원활한 이동과 그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한 통일된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2016년 5월 EU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자연인의 보호에 관련된 규정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련된 규정을 정하는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이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2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 5월 25일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11월 인재근 의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감독기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제자구 심사를 거쳐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한편, 인재근 의원의 발의와 동시에 이재정 의원이 EU GDPR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였다. 특히, 인재근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EU GDPR에서 신설한 데이터 이동권,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를 규정하는 등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

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음을 법률안의 제안 이유에서 밝히고 있다.

이처럼 EU GDPR의 제정 및 발효 이후에 개인정보 보호 법률 체계 및 거버넌스 일원화, 데이터 규제 혁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EU GDPR 상의 데이터 이동권,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화를 이루지는 못했다.

일부에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추진되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인 방안 부재의 아쉬움을 나타내며 데이터 이동권,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의 도입을 바탕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및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와 균형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데이터 이동권 및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방법

EU GDPR에서 신설한 데이터 이동권¹⁾,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를 우리나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의 검토를 연구의 목표로 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데이터 이동권,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의 도입 배경 및 입법 취지를 분석하고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EU GDPR의 본문 외에도 전문, EDPB(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에서 발간한 의견서²⁾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내 입법 동향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추진한 해커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결과 등을 정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주요국의 입법례 등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우리나라의 현실과 정보주체,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데이터 이동권,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찰하기로 한다.

1) 실무 상 EU GDPR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데이터 이동권 또는 개인정보 이동권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U GDPR에서 신설한 권리를 우리나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의 검토를 연구의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동권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기로 한다.

2) 본 논문에서는 EDPB로 격상되기 전의 제29조 작업반(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분석하기로 한다.

제2장 데이터 이동권

제1절 개념 및 의의

2018년 5월 시행된 EU GDPR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중 하나로 데이터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신설하였다.³⁾ 2017년 4월 EU 제29조 작업반(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에서 발간한 의견서에 따르면 데이터 이동권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체계적이며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고, 이 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한다.⁴⁾ 데이터 이동권은 기존의 정보주체에게 인정된 고지받을 권리, 접근권, 정정권, 삭제권, 처리정지권, 처리거부권 등과 비교하면 차이점을 보인다.

기존의 정보주체에게 인정된 권리들은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 즉, 수집·이용·

-
- 3) GDPR 제20조(데이터 이동권)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본인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체계적이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방해 받지 않고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이전할 권리를 가진다.
 - (a) 처리가 제6조(1)의 (a)호나 제9조(2)의 (a)호에 따른 동의나 제6조(1)의 (b)호에 따른 계약을 근거로 하는 경우
 - (b) 처리가 자동화된 수단으로 시행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본인의 개인정보 이동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정보주체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한 개인정보처리자에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 직접 이전할 권리를 가진다.
 3.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는 제17조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해당 권리는 공익을 위해서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여된 공식권한을 행사하여 이루어지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제1항에 규정된 권리는 다른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4)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Guidelines 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2017, p.3.

제공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통제하고자 인정된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오·남용 통제의 관점에서 인정된 기존의 권리들은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이전되는 것을 제약하는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체계에서는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과 재사용의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런데 EU GDPR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정보주체의 통제 하에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과 재사용을 촉진시켜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이루고자 데이터 이동권을 신설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U가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는 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② EU 역내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 ③ 온라인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건강한 경쟁 촉진 등으로 알려져 있다.⁵⁾

데이터 이동권은 기존의 정보주체에게 인정된 권리와는 달리 정보주체에게 보다 능동적,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데이터 이동권을 통해 정보주체는 본인의 데이터를 소유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이전도 가능하며, 금전적인 가치의 획득 및 맞춤형 서비스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이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거대 IT 공룡기업이 국내에 진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독점 현상을 막아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⁶⁾

결국 데이터 이동권을 통해 일정한 제약을 받은 기존의 열람권과는 달리 IT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정보주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새로운 개인정보처리자의 시스템 등으로 개인정보를 쉽게 이전 혹은 복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정보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정비방안」, 2019, 271-272면.

6) 고수윤·이수안·손경호, “데이터이동권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6집 제2호, 2020, 5면.

주체에게 더욱 강화된 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고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간 관계가 재균형(re-balance)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⁷⁾

이하에서는 국내·외 입법례 및 동향 등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살펴보고 데이터 이동권을 우리나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상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7) 주 4, p.4.

제2절 비교법적 분석

I . EU GDPR

앞서 살펴본대로 EU GDPR에서 도입한 데이터 이동권의 입법 취지는 정보주체에게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정보주체가 특정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으며,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 간 품질 및 서비스 경쟁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많은 정보주체들이 자신의 일상생활 혹은 중요한 자료들을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급하는 디지털 공간에 저장하여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종속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입법과정에서 제기되었다.⁸⁾

데이터 이동권의 행사 요건을 살펴보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처리된 경우, 정보주체가 계약 당사자로 있는 계약의 이행을 위해 또는 계약 체결 전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처리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의나 계약 이외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데이터 이동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데이터 이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자동화된 수단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한정된다.⁹⁾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데이터 이동 요구를 받은 경우 체계적,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이 되면서 컴퓨터 판독이 가능하며, 상호 호환이

8) 박노형 외 8인, 「EU 개인정보보호법」, 박영사, 2017, 156면.

9) GDPR Recital (68).

가능한 형식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동하여야 한다. 즉,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령할 수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언제라도 개인정보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상호 호환적인 포맷을 개발하도록 장려된다.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기술적으로 양립 가능한 처리시스템을 채택 또는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¹⁰⁾.

한편,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 이동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자적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전자적 방식으로 데이터 이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¹¹⁾.

II. 영국

영국은 2011년부터 ‘Better Choices, Better Deals’의 세부 추진과제로 마이데이터(MiData) 제도를 운영하였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위하여 시장에서의 소비자 주권 강화를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취하고 있다.¹²⁾ 2013년에는 「기업 및 규제 개혁법(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을 개정하여 정보주체인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이동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업 및 규제 개혁법」 제89조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상대방은 가스나 전기의 공급자, 휴대폰서비스사업자, 금융

10) GDPR Recital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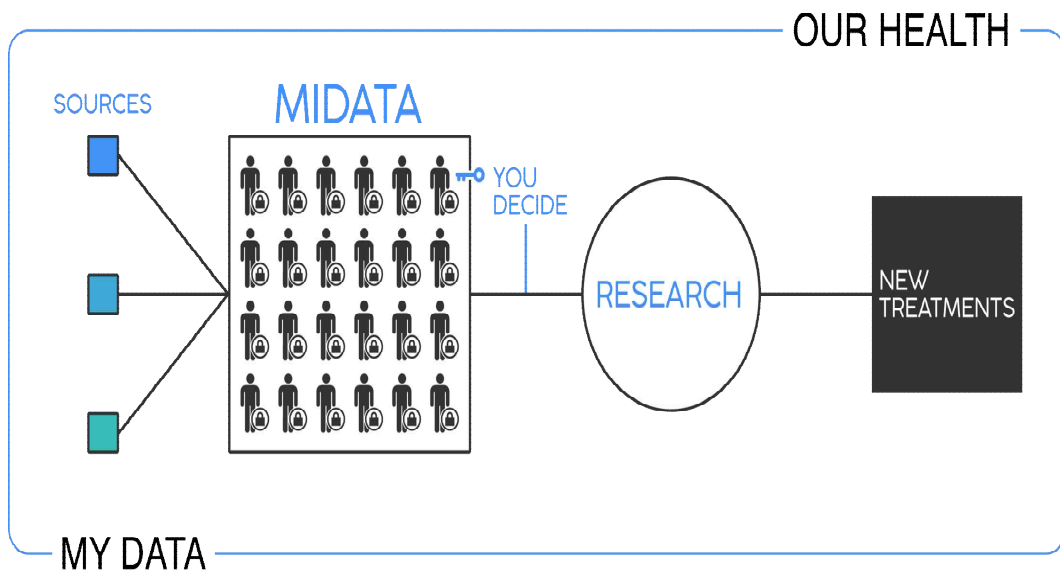
11) GDPR Recital (59).

12)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8 데이터산업백서 제2부」, 2018, 62면.

서비스 사업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이들은 정보주체인 본인에게 직접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본인의 요청 혹은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자의 요청에 의하여 데이터를 전송받도록 승인된 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할 수 있다. 전송의 대상이 되는 고객데이터는 전자형식으로 보관 및 거래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며, 전송으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 비용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금융, 통신,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거래내역을 마이데이터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아 이를 정보주체가 가격 비교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 및 거래 조건 등을 제시해주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¹³⁾

<그림 1> MiData 체계도¹⁴⁾



13) 주 5, 280~283면.

14) MIDATA Cooperative 홈페이지, <https://www.midata.coop/en/home>.

III. 프랑스

프랑스는 EU GDPR에 대응하여 2016년에 제정된 「디지털공화국법(Loi n° 2016-1321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 The Digital Republic Bill)」을 통하여 데이터 이동권을 도입하였다.

「디지털공화국법」은 전자우편이나 클라우드 컴퓨팅의 주요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주체가 쉽게 자신의 데이터를 보관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시장의 유통성을 증대시키려는 목적 하에 같은 법 제12조에서 전자우편 서비스 사업자가 정보주체에게 전자우편 서비스와 연락처 목록을 다른 서비스 사업자에게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¹⁵⁾

정보주체는 「디지털공화국법」에 의하여 개인정보, 업로드한 모든 파일, 사업자에 의해 가치가 높아진 경우를 제외한 이용자 계정을 사용하면서 생성된 데이터, 서비스공급자의 변경을 용이하게 하거나 다른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와 같은 이용자 계정과 관련된 기타 데이터 등을 회수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확립하였다.¹⁶⁾

또한, 프랑스에서는 레인보우버튼 프로젝트를 통하여 EU GDPR에서 명시된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공통의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레인보우버튼 프로젝트에는 은행, 에너지, 전력, 가스, 보험, 사회복지,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8개 기관이 참여하여 데이터 이동의 일관된 프로세스를 구현하여 정보주체가 접근하기 쉬운 환경을 마련하였다.¹⁷⁾

15) 欧州におけるデータ・ポータビリティの在り方を巡る議論の動向, 佐々木勉構成員提供資料, 平成 28 年 4 月, pp.39-46; 주 5, 285면에서 재인용.

16) 한국인터넷진흥원, 해외 개인정보보호동향 보고서 2018년 1월 2주, 7면.

17) MESINFOS (2017), RAINBOW BUTTON project Enabling personal data portability and turning it into an opportunity for innovation and customer relationship executive

<그림 2> 레인보우버튼 프레임워크 공통 시나리오 설계 예시¹⁸⁾



IV. 독일

독일은 1990년에 「연방정보 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을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 제정한 후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였다. 최근에는 EU GDPR의 시행에 대응하여 개정을 하였는데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개정 사항은 없었다.

다만, 독일의 데이터 보호기관인 BfDI(Der Bundesbeauftragte fü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는 데이터 이동권과 관련하여 ‘널리 이용되는 구조화된 포맷’으로만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석되는 것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즉, 데이터 처리 전반에 데이터 이동권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¹⁹⁾

summary; 주 5, 285면에서 재인용.

18)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국내개인데이터 이용 환경 분석 연구보고서」, 2017, 50면.

19) 박현일, “정보이동권의 국내 도입 방안”, 경희법학 제52권 제3호, 2017, 217면.

V. 미국

미국의 경우 2018년 6월에 제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프라이버시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에서 데이터 이동권을 접근권을 통하여 인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11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보주체가 의료(블루버튼), 에너지(그린버튼), 교육(마이스튜던트버튼), 태양광(오렌지버튼) 분야에서 데이터를 내려받아 직접 활용 또는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공시(Smart Disclosure)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상품 선택과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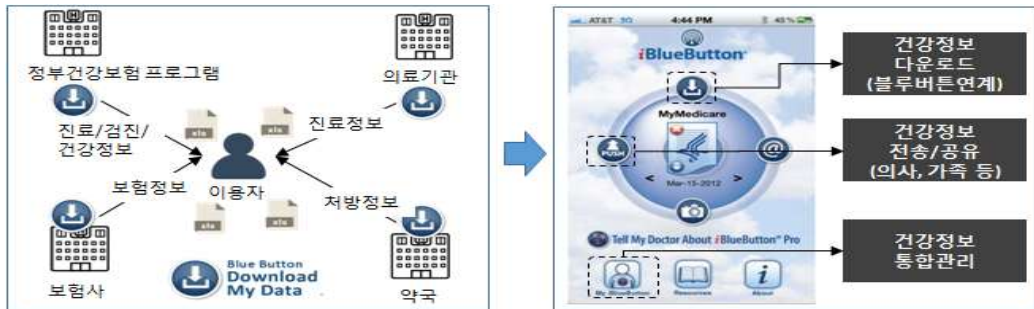
<그림 3> 스마트공시 제도²⁰⁾



특히, 의료분야는 2010년 재향군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정보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2년부터 미국 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2018년 기준 3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블루버튼을 활용한 민간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20) 주 18, 8면.

<그림 4> 블루버튼을 활용한 민간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도²¹⁾



이에 대한 각 근거 법률 및 조항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이동 및 책임에 관한 법률(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PA)」의 개인의 의료 데이터 사본 접근 권한 조항, 「가족 교육 및 프라이버시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의 학부모와 학생의 학적 기록에 대한 접근 및 사본 요청 권한 조항이다.

한편 데이터 이동권과 관련하여 EU GDPR과 CCPA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사점으로는 CCPA에서는 “소비자가 기업이 처리하는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행사한 경우 기업은 그 데이터를 이동가능한 형식으로 또한 기술적으로 허용된다면 데이터를 다른 기업에게 아무런 장애 없이 전송할 수 있도록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 GDPR에서는 앞에서 살펴본대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본인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체계적이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방해 받지 않고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이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EU GDPR에서는 데이터 이동권을 독립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

21)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 2018, 11면.

만 CCPA에서는 접근권의 하나로 인정을 하고 있어 데이터 이동을 청구하는 시점에서 1년 전까지 수집된 데이터에만 권리가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EU GDPR에서는 데이터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바로 전송하는 것도 인정하지만 CCPA에서는 정보주체가 직접 받거나 받은 데이터를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송하는 것만 인정한다는 차이점도 보인다.²²⁾

VI.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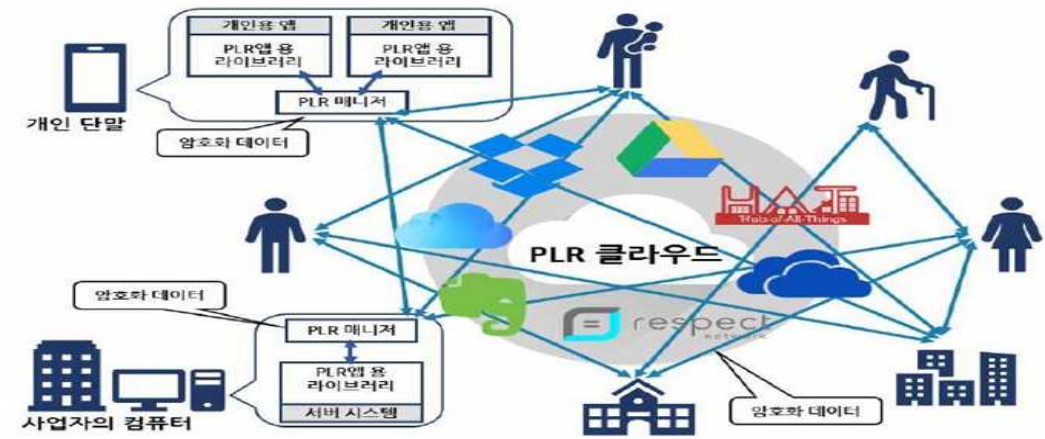
2016년 12월에 제정된 일본 「관민데이터활용추진기본법」에서는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의 기본 이념을 정립하고 국가의 책무,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에 관한 기본 계획과 전략회의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민데이터활용추진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 이용의 촉진(제10조), 마이넘버카드의 이용(제13조), 관민정보시스템 규격 정비 및 호환성의 확보와 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기반 정비(제1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령을 재정비하고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일본 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대응책으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위하여 NEC, 후지쯔 등 대기업과 다양한 규모의 병원들이 협업하여 데이터 이동권의 개념을 도입한 PLR(Personal Life Repositor), 즉 개인 생애 저장소 시범 사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PLR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분산 및 공유를 추구하여 정보 유출 없이 정보 집중을 최소화하면서 다단계 통합 인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22) 주 5, 286-287면.

<그림 5> PLR 모델



또한, 데이터 제공 등의 이외에 복잡한 기능은 없고 이용자, 소프트웨어 공급자, 스토리지 제공자로 역할을 구분하고 PLR 통합 앱을 개발하여 인증, 암호화, 데이터 공유, 설문 등의 기능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²³⁾.

<그림 6> 이용자, 소프트웨어 공급자, 스토리지 제공자의 역할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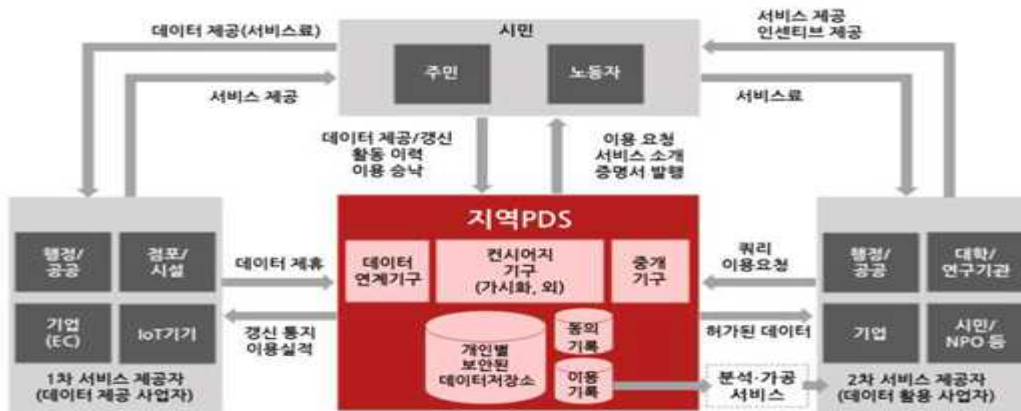


23) 주 18, 57-60면.

24) 주 5, 333면.

한편, 일본 후지쯔 기업에서는 개인의 활동 데이터를 저장 및 보관하여 개인의 의사에 따라 제3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받는 지역 PDS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²⁵⁾

<그림 7> 후지쯔 기업의 지역 PDS 시범 사업



Ⅶ. 우리나라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상에는 데이터 이동권과 관련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커톤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2018년 6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의결하였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정보주체의 자기통제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 이동권의 확립을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미국의 블루버튼 사례를 예로 들

25) 주 18, 62면.

며 정보주체가 기관으로부터 자기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활용체계를 정보주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의료, 금융, 통신 분야에서 대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찾는 마이데이터(MyData) 도입을 발표하였다.

<그림 8> 마이데이터 개요²⁶⁾



한편, 2020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료·금융·공공·교통·생활·소상공인 등 6개 분야에서 8개의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과제를 선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주체를 중심으로 한 개인데이터 활용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마이데이터 산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개인이 본인정보를 수집·저장·관리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인 마이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실증서비스를 추진하여 정보주체가 데이터 이동권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고, 희망하는 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유통·활용하는 마이데이터 플랫폼의 시대로 본격 진입함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보상을 받고, 기업은 새로운 데

26) 주 21, 10면.

이터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²⁷⁾

위와 같은 마이데이터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및 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020년 1월 개정되어 8월 시행 예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도입한 금융 분야가 그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즉, 의료 분야는 「의료법」, 공공 분야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교통 분야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정보주체의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요구된다.

<표 1> 2020년 본인정보 활용지원(MyData) 실증서비스 선정 과제 목록

분야	과제명	서비스
의료	분산원장증명(DID)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유통 플랫폼	전자처방전을 개인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해 스스로 정보를 관리, 중복 검사를 억제, 맞춤형 자가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개인 의료·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홈케어 서비스	개인의 건강검진 및 의료 처방 데이터를 앱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며 유전자분석, 정신 건강·생활습관 관리 등 개인 맞춤형 홈케어 서비스 제공
금융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및 금융상품 개발	개인의 모빌리티 데이터 분석 데이터와 공공·금융정보를 결합해 신용평가, 금융상품 서비스 제공
금융	금융서비스를 연결하는 On-Device 기반 마이데이터 결합 플랫폼	개인 데이터를 행동 순서에 따라 수집·결합해 개인정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공공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공공 교통수단 클린이용 서비스	공공 교통수단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난 알림 서비스 확대 및 통합 경로 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과기정통부, 의료·금융·공공 등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8개 선정, 2020.

분야	과제명	서비스
생활	직장인 맞춤 웰니스 서비스 : M-Box	개인의 건강진료와 카드 내역 분석을 통한 직장인 맛집추천, 정신 건강 관리, 장보기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	소상공인 신용평가 기반 상가 부동산 가치 정보 거래 플랫폼	상가 부동산 데이터 수집·유통을 통한 대출연계 소상공인 평가모형으로 점포 거래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상권분석 제공
교통	Micro-MaaS MyData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데이터 에코시스템 구축	개인의 MaaS 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방안 및 최적의 교통수단 재배치 방안 분석

특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데이터 이동권과 유사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도입함으로써 금융 분야에서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에 관한 법률 상 규율 체계를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그 실현을 지원하는 독자적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용 조회업(Credit Bureau)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별도로 신설하여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여 정보주체의 신용관리, 자산관리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행사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본금 요건과 금융권 출자 의무 등의 진입 장벽은 최소화하여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의 부담은 완화하되, 제도 초기 단계부터 건전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판매와 자금과의 이해 상충, 과도한 데이터 집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

하고 금융회사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전산상 정보 제공방식인 표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채택하여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예방하는 등 제도적, 기술적 여건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강력한 본인인증 절차, 사업자의 정보활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규제와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우려를 해소하였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으로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존의 소극적인 성격의 정보주체의 권리만으로는 정보주체가 데이터 기반 혁신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배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의 경우 구조가 복잡하고 표준화가 어려운 특성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필요한 최적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²⁸⁾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 산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며 정보주체의 적극적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0년 5월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²⁹⁾를 실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과 관련하여 전송요구권의 원활한 행사를 위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동의와 사후통지 조항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이를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2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2018.

29)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의 적정성, 개인정보 관리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해당 법령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 참조).

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 제4항 제8호와 같은 조 제6항 제4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래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신설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관련 조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관련 신설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p> <p>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4. 개인신용평가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p>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p> <p>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5조제2항제1호 부터 제20호의 자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p>② 법 제33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p>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p>	<p>③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p>

<p>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해당 신용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p> <p>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p> <p>나.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p> <p>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p> <p>3.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개인 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p> <p>③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 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제3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p> <p>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p> <p>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p> <p>3. 「지방세기본법」 제86조</p> <p>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p> <p>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p>	<p>호와 같다.</p> <p>1. 법 제2조제9의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별표5에 따른 정보</p> <p>2. 국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p> <p>3.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공적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p> <p>4. 제18조의6제4항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료 납부정보 등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p> <p>5. 그 밖에 제1호부터 4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정보</p> <p>④ 법 제3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p>
--	---

련 규정

④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으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3.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2. 「관세법」 제116조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4. 「전자정부법」 제42조
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7. 「외국환거래법」 제21조
8.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법률의 관련 규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

⑤ 법 제33조의2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p>⑥ 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제32조 제7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p>2.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p> <p>⑦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p> <p>⑧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 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등은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할 수 있다.</p>	<p>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⑥ 법 제33조의2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법률의 관련 규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 <p>⑦ 법 제33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하였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에 의하여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법 제33조의2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가 아
---	--

<p>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전송요구 철회의 방법, 제8항에 따른 거절이나 정지·중단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닌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경우</p> <p>5.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p> <p>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p> <p>⑧ 제7항에 따라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정지·중단한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지체없이 해당사실을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⑨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법 제33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으로 특약사항을 기재하거나 약정하여 해당 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한 경우 또는 비대면 정보 조회를 금지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대면으로 전송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p> <p>⑩ 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제공(다만, 최근 5년 내의 신용정보가 아닌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정한 별도의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전송이 지연된 사실 및 그 사유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p> <p>⑪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p>
---	---

른 전송요구의 철회, 거절, 중지 또는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⑫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와 관련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4(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 전송요구의 운영 등)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의9제7항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 제33조의2제9항에 따른 전송요구에 관한 사항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는 협의회, 기관 등을 둘 수 있다.

1.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개인신용정보 규격 표준화, 검증 및 오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전송요구에 따른 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3.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4. 법 제22조의9제4항 및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방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개인신용정보 전송·관리를 위한 신용정보주체 등의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6. 안전한 개인신용정보 전송·관리를 위한 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기관 등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보안원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제3절 평가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법제를 정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되는 등 데이터 이동권 관련 산업 활성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EU GDPR과 2020년 8월 시행 예정인 우리나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교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권리의 주체와 상대방

EU GDPR의 데이터 이동권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주체는 개인인 정보주체로 동일하다. 다만, EU GDPR은 제20조에서 공익을 위해서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여된 공식권한을 행사하여 이루어지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처리에는 데이터 이동권이 적용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2. 권리의 대상과 항변사유

EU GDPR의 데이터 이동권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대상은 동의 또는 계약을 근거로 하거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데이터로 그 범위가 동일하다고 평가받는다.

항변사유와 관련하여 EU 제29조 작업반(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에 따르면 데이터 이전 요청에 응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나 제3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수행할 데이터의 처리가 법을 준수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데이터 이동권으로

인하여 장래의 불확실한 데이터 이동 요구에 대비해서 법에서 정하는 데이터 보유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할 의무는 없음을 밝히고 있다.³⁰⁾

반면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정지·중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항변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³¹⁾

3. 권리의 실현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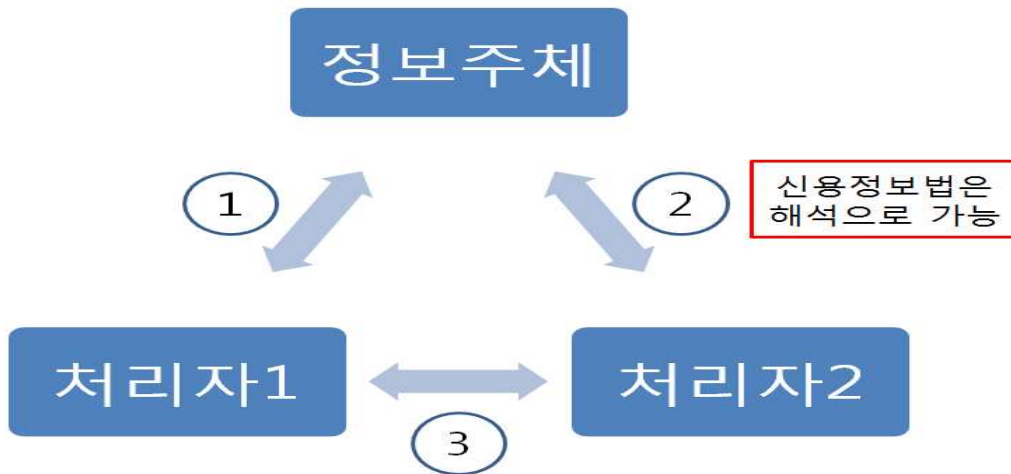
EU GDPR 제20조에서는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정보를 ① ‘컴퓨터가 읽을 수 있고 널리 이용되는 구조화된 포맷’으로 정보주체가 받을 권리, ② 정보주체가 받은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아무런 장애 없이 전송할 권리, ③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전송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①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권리, ③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개인신용평가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EU GDPR과 같이 ② 본인이 받은 개인정보를 제3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전이 가능하므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0) 주 4, p.6.

31) 진보네트워킹센터 외 12개 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2018, 12면.

<그림 9> 데이터 이동권 및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체계도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정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다른 금융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권리로서 신용정보주체가 능동적으로 본인의 신용정보를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는 데 의의가 있다. 2018년 3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통해 소비자가 보다 나은 금융 서비스를 간편하게 선택하고 제공받는 동시에 적극적인 신용관리도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컨대, 개인이 신용평가기관에 자신의 사회보험료, 통신료 납부 실적을 CB사, 금융회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신용평가의 가점을 취득하거나 금융기관에 본인 거래정보를 신용정보관리업자에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활용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중복 규제, 지나치게 엄격한 사전동의 기반의 제도로 인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 인식에 근거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금융 업계에서는 금융 분야에서 정형화된 다양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³²⁾

32) 고환경·손경민·주성환, “정보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산업”, BFL 제93호, 2019, 22-24면.

제3장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권리

제1절 개념 및 의의

프로파일링의 사전적 의미는 “알려진 속성을 이용하여 어떠한 것에 대해 정보를 유추하는 것” 또는 “어떠한 영역에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 혹은 예측하거나 특정 유형의 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의 행동을 기록하여 심리적 특성들을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파일링이란 범죄학에서의 프로파일링을 떠올리기 쉽다. 범죄학에서의 프로파일링은 용의자에 대한 일부 정보와 범죄 현장의 정보를 통하여 용의자를 특정하는 수사기법이다. 이러한 프로파일링은 “행동은 그 사람의 특성을 반영한다”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사람의 성격, 행동양식에 따라 범죄 행동도 사회문화적 맥락의 범위에서 일정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 처리 관점에서의 프로파일링은 범죄학에서의 프로파일링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EU GDPR 제4조 제4호에서는 ‘프로파일링’이란 자연인과 관련된 일정한 개인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하여, 특히 그 자연인의 업무능력, 경제상황, 건강, 개인적 선호, 관심사, 신뢰도, 행동, 위치 또는 이동과 관련된 측면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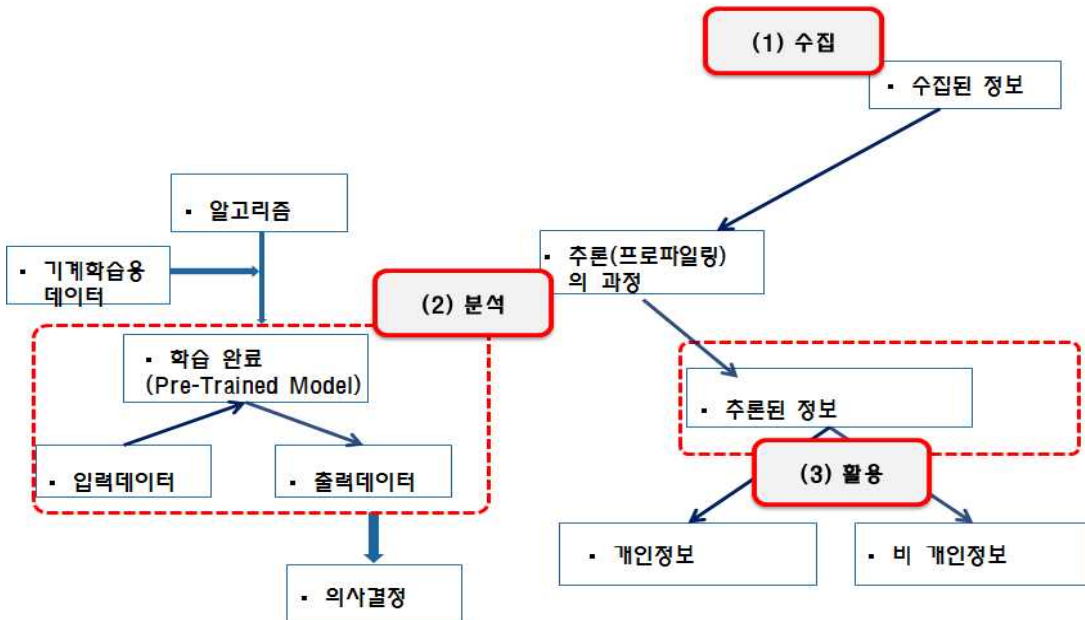
프로파일링을 개인정보 관점에서 살펴보면 추론된 데이터를 도출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추론된 데이터란, 확률에 기반한 분석 과정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즉, 개인정보 영역에서의 프로파일링이란 “추론된 데이터의 분석 또는 데이터 분석의 자동화 및 개인화”라고 정의할 수 있

다.

구체적으로 EU의 데이터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EU 제29조 작업반(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의 의견서 등을 살펴보면, 프로파일링은 “사람을 대상으로 자동화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사람에 관하여 예측하는 자동화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³³⁾

아직 프로파일링을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확실적인 기준이 확립되거나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근 ① 수집(Acquisition), ② 분석(Analysis), ③ 활용(Application)의 3단계로 구분하는 견해³⁴⁾가 제기되었고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0> 프로파일링 진행 단계³⁵⁾



33) 주 5, 154-157면.

34) 한국인터넷진흥원, 「프로파일링 관련 기술 동향 분석 및 개인정보 정책 방안 연구」, 2018, 45-55면.

35) 주 5, 219면.

그런데 이러한 프로파일링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EU GDPR 제22조에서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파일링을 통하여 불필요한 정보, 소모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줄이고 정보주체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보주체의 권익 제고와 기업의 이윤 추구를 모두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제도적 시각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국내·외 입법례 및 동향 등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살펴보고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를 우리나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상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2절 비교법적 분석

I. EU GDPR

EU GDPR에서는 제4조(정의)³⁶⁾, 제22조(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³⁷⁾ 등에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위 조문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정보주체에게 법적 효력을 주거나 그에 유사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평가와 결정이 자동화된 처리에만 근거한 결정에 따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람의 개입 없이 개인에 대한 업무능력,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개인의 기호 및 관심, 신뢰도, 행태, 위치, 이동 경로(동선) 등이 기계적으로만 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³⁸⁾

36) GDPR 제4조(정의) (4) 프로파일링은 특히 자연인의 업무 성과, 경제적 상황, 건강, 개인적 선호, 관심사, 신뢰도, 행태, 위치 또는 이동에 관한 측면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우로서, 자연인에 관련한 개인적인 특정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가리킨다.

37) GDPR 제22조(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 1. 개인정보주체는 프로파일링 등, 본인에 관한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처리에만 의존하는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결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a) 개인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b) 개인정보처리자에 적용되며,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 및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c) 개인정보주체의 명백한 동의에 근거하는 경우

3. 제2항 (a)호 및 (c)호의 사례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 및 정당한 이익, 최소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적 개입을 확보하고 본인의 관점을 피력하며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데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4. 제2항의 결정은 제9조(2)의 (a)호와 (g)호가 적용되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 및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가 갖추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제9조(1)의 특정 범주의 개인 정보를 근거로 해서는 안 된다.

38) 주 8, 165면.

다만, EU GDPR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프로파일링을 포함하여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이 ①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에 근거한 경우, ③ EU 또는 회원국 법이 자동화된 처리에만 결정을 허용한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반대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 및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적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자동적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가 포함된 적합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에게는 최소한 ① 사람의 개입을 요구할 권리, ②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 ③ 평가 후의 결정에 대한 설명을 획득할 권리, ④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특수한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가 보장되도록 ① 프로파일링을 위한 적절한 수학적 또는 통계적 절차를 이용하여야 하고, ②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바로잡고 에러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③ 정보주체의 이익과 권리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특히 인종적·민족적 유래, 정치적 견해, 종교 또는 신념, 노동조합 가입 여부, 유전적 특징, 건강 상태, 성적취향 등에 근거해서 개인에 대한 차별적 결과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한편, 특수한 범주의 개인정보인 민감정보를 기초로 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거나 EU 또는 회원국의 법에 근거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써,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 및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도 자동적 의사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 개인정보와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나 민감정보의 자동화된 처리를 위해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때에는 특별히 차별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고,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자동적 의사결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³⁹⁾

II. 영국

영국은 1984년에 최초로 제정된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84)」 이후 1998년 1차 개정, 2018년 2차 개정을 통해 EU GDPR을 보완하는 등 브렉시트(Brexit)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EU 법 집행 지침(Law Enforcement Directive)을 이행하고 법 집행 기관 및 정보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등 EU GDPR의 적용 범위가 미치지 않는 영역까지 확대하여 규정하는 특징을 가진다.⁴⁰⁾

프로파일링과 관련하여 영국의 「정보보호법」 제12조 제1항은 “개인은 언제라도 정보관리자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해 업무수행능력, 신용, 신뢰성, 품행과 같이 개인에 관한 평가의 목적상 그 개인이 정보주체인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관리자에 의하거나 그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처리가 오직 자동적 수단에 의한 처리에만 근거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18년 개정된 「정보보호법」에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의를 EU GDPR과 동일하게 추가한 것 외에는 1998년 이후 영국의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입장은 큰 변화가 없다.

39) 주 8, 165-167면.

40) 주 5, 189면.

III.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정보처리, 문서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자 법률(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a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es)」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일반법의 역할을 한다.⁴¹⁾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개인의 행태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은 정보주체의 개성의 일부 측면을 평가하고자 하는 자동화처리에 근거할 수 없고, 정보주체의 프로필을 정의하거나 정보주체의 개성 중 일부 측면을 평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자동화 처리를 유일한 이유로 하여, 정보주체에 법적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2년여의 논의 끝에 「2016년 10월 7일자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였고 그 수준은 GDPR과 거의 대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⁴²⁾

한편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 독립기구인 CNIL(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은 EU GDPR 통과 이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⁴³⁾ 프로파일링에 관한 내용도 많은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려졌고, 프랑스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 입법 및 유권 해석을 준비 중이다.

IV. 독일

4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DPR 발효에 따른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입법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017, 189면.

42) 주 40, 220면.

43) CNIL 홈페이지, <https://www.cnil.fr/fr/consultation-reglement-europen>.

2018년 5월 독일은 「연방정보 보호법」을 EU GDPR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개정하였다. 「연방정보 보호법」 제46조 제4호 및 제70조 등을 통해 프로파일링의 정의에 대해서는 EU GDPR과 큰 차이가 없지만⁴⁴⁾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의 예외적 허용에 대해서는 EU GDPR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방정보 보호법」 제37조에서는 EU GDPR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에 근거한 경우 외에 보험계약에 따른 급부 이행의 범위 내인 경우,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도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V. 미국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율규제(self-regulation)을 원칙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수의 개별법은 존재하지만 EU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CCPA를 포함한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 체계에서는 EU GDPR과 같이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프로파일링에 관한 내용이 CCPA 2개 조항에서 언급되고 있다.⁴⁵⁾

44) 주 40, 84면.

45) CCPA 1798.140.(d)(4)

단기간의 일시적 사용. 단, 이러한 개인정보는 다른 제 3 자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하고 소비자에 대한 프로파일을 만들거나 동일한 상호작용의 일부로서 표시되는 광고의 콘텐츠 및 추천설정을 포함한 특정 개별 소비자의 현재 상호작용 이외의 경험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되

현재 미국 의회에 연방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제정을 위한 다수의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으며, 일부 법률안에서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하원에 계류 중인 델벤 법안(DelBene Act)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민감정보를 프로파일링 하는 경우 추가적인 프라이버시 정책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상원에 계류 중인 위던 법안(Wyden Act)에서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상당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불공정 행위, 소비자 차별 위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⁶⁾

한편, 미국은 민간부문에서의 자율규제가 활발한 특성을 보이는데, 개인정보보호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관련 공익 연구기관인 전자정책정보센터(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이하 “EPIC”이라 한다)는 온라인 트래킹과 행동 프로파일링(Online Tracking and Behavioral Profiling)이라는 웹페이지를 통해 프로파일링 및 데이터 중심의 타겟 마케팅 관련 현황과 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EPIC은 온라인 트래킹 및 행동 프로파일링이 공정한 정보 처리 원칙(Fair Information Practice)에 위반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⁴⁷⁾

위에서 살펴본대로 미국은 프로파일링 관련하여 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율규제 방식으로 프로파일링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

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CCPA 1798.140.(o)(1)(k)

소비자의 기호, 특성, 심리적 추세, 선호도, 경향, 행동, 태도, 지능, 능력 및 적성을 반영한 소비자에 대한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 본 조항에서 식별된 정보로부터 나온 추론.

46) 주 5, 204-210면.

47) EPIC 홈페이지, <https://www.epic.org/privacy/consumer/online-tracking>.

접적인 규제를 실시하는 EU에 비해 자율규제를 중시하는 미국의 사회·문화적인 배경도 미국과 EU의 차이를 만드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 시대의 도래와 EU GDPR 시행 등으로 인하여 자율규제를 중시하는 미국 내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흥미로운 변화라고 볼 수 있다.

VI. 일본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아직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의사결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018년 통과한 EU 적정성 평가⁴⁸⁾에서도 EU 측에서 프로파일링 규정의 부재를 지적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⁴⁹⁾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48) EU가 GDPR을 기준으로 상대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EU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기업은 표준계약 체결 등 개별적인 행정부담 없이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상대국으로 이전할 수 있음.

49) 제17조(적정한 취득) ①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거한 경우

2.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때

3. 공중위생의 향상 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의 추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때

4.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法令이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게 되면 당해 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5. 당해 요배려개인정보가 본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제7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자 및 그밖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에 의해 공개되고 있는 경우

취득이 프로파일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프로파일링을 구성하는 정보는 수집된 정보 외에도 생성된 정보를 포함하는데 이를 취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일본 총무성 고시 및 재단법인 방송보안센터의 지침 제34조⁵⁰⁾가 프로파일링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방송 영역에 있어서는 적용될 수 있으나, 전 분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프로파일링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한편, 일본 내각 IT전략본부의 개인 데이터에 관한 검토회의에서는 프로파일링의 대응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프로파일링 관련 확립된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렵고, 프로파일링 이슈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서 자율규제에 의한 것이 바람직하고 중장기적인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결국 일본 내에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¹⁾

Ⅶ. 우리나라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상에는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20년 1월 개정되어 8월 시행 예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권리를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등에게 자동화평가 실시 여부 및 자동화평가의 결과 및 주요기준, 기초자료 등의 설명을

6. 그 밖에 전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

50) 수신자정보취급사업자는 시청기록을 취급함에 있어서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를 추지하거나(시청이력 취득 등에 관한 동의) 제3자에게 추지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51) 주 34, 34-41면.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삭제,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권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자동화평가”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EU GDPR은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를 가지는 반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주체가 유리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정보의 정정과 삭제를 요구할 권리만을 규정하였으며 금융회사 등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위반하여 설명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등 EU GDPR에 비해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⁵²⁾

아래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신설된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관련 조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3>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관련 신설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	제31조의2(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52) 한국행정연구원, 데이터 3법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KIPA 통권 88호, 2020, 12면.

<p>가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1. 다음 각 목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p> <p>가. 개인신용평가</p> <p>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한정한다)</p> <p>다. 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p>2.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화평가의 결과 나.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다.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초정보”라 한다)의 개요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②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p> <p>1. 법 제2조제1호의3가목 각각의 거래</p> <p>2.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p> <p>③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나목괄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말한다.</p> <p>④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2항 각호의 거래에 관한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 여부의 결정을 말한다.</p>
<p>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p> <p>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p>	

<p>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p> <p>2.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가.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p> <p>나.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p> <p>③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p> <p>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p> <p>2.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p> <p>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의 절차 및 방법, 제3항의 거절의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p>	<p>⑤ 법 제36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p>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p> <p>2.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p> <p>⑥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p>
---	--

령령으로 정한다.

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⑦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정정·삭제 등 필요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⑧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설명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가목의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요구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자동화평가의 결과로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 자체적으로 정한 신용등급 또는 점수(백분율을 포함한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나목의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 : 자동화평가시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별(신용거래 판단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등) 반영 비중을 안내하거나 또는 각 금융권역 협회에서 마련한 양식에 따라 안내할 수 있다.
3.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다목의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 : 제4조에 따라 설명을 요구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 신용정보

원 및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금융회사 등이 직접 입수한 신용정보를 안내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 등이 기초정보를 자체적으로 가공하여 생성 또는 추론한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 ⑨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한 경우 거절의 근거 및 판단근거를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3절 평가

위에서 살펴본 프로파일링 관련 국내·외 입법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프로파일링 관련 국내·외 입법례

	우리나라	유럽	미국	일본
규제 여부	○ (개별법)	○ (일반법)	○ (자율규제)	X
법적 구속력	○	○	X	X
프로파일링 개념 및 정보주체 권리	○	○	X	X

1. 규제 여부

일본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유럽, 미국은 프로파일링 관련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유럽은 개별법 또는 일반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는 반면에 미국은 자율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를 하는 등 규제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법적 구속력

우리나라와 유럽은 법률을 통해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만, 자율규제 방식을 채택한 미국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3. 프로파일링 개념 및 정보주체 권리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개정되어 8월 시행 예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자동화평가의 정의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36조의2에서 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권을 보장하고 있다. EU GDPR에서는 제4조에서 프로파일링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22조 등에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 규정을 두고 있다.

제4장 데이터 이동권 및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권리의 도입 방안

제1절 데이터 이동권

1. 도입 필요성

데이터 이동권은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모두의 입장에서 권리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EU 제29조 작업반(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에서 발간한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의견서를 살펴보면 데이터 이동권은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의 이동, 복사, 전송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활성화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더 많은 통제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 중심에서 정보주체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으로써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간 관계를 수평적으로 조정하고 정보주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정보주체는 데이터 이동권을 통해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하는 등 데이터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⁵³⁾

데이터 시장의 특성 상 거대 IT 기업의 데이터 독점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 등의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

53) 주 6, 8면.

는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인하여 시스템 및 체계 구축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가격 경쟁력이나 서비스 혜택 제고를 통해 기존의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글로벌 IT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은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⁵⁴⁾

II. 일반법 규율방안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EU GDPR과 같이 데이터 이동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열람청구권을 통해 데이터 이동권이 인정될 수 있다.

우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제3호에서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1항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제1항은 “정보주체는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

54) 주 6, 8면.

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제7항은 “개인정보 열람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른다.”고 규정하며, 그 서식에서는 열람 형태의 하나로 “사본·출력물, 전자파일”이라고 정하고 있고, 열람 방법의 하나로 “전자우편”을 정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규정을 토대로 열람청구권은 사본의 발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사본을 저장할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해당 데이터를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EU GDPR에서 규정하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고 널리 이용되는 구조화된 포맷’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EU 제29조 작업반(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이 의견서를 통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의 사용을 권유하고 있지만 이 역시 보안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이 있어 통용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으므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상 데이터 이동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 CCPA에서도 데이터 접근권을 통하여 데이터 이동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긍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⁵⁵⁾

또한, 입법론적인 관점에서도 개별법으로 규율할 경우에 데이터 이동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앞서 살펴본대로 데이터 이동권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에게 위 권리를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신설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데이터 이동권을 규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개인

55) 주 5, 303면.

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열람하거나 그 정보의 정정, 삭제, 차단 등을 요구함으로써 자신에 관한 정보에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통제 내지 관리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정보통제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로 정의한 바 있다. 나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의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하였다.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내용을 스스로 형성한다는 의미가 아닌 자신에 관한 사항을 남에게 알릴지 말지, 알린다면 어떤 사람에게 어느 정도로 알릴 것인지 등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한다는 개념이다.⁵⁶⁾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이른바 ‘동의 만능주의’의 부작용으로 형식적인 동의 절차로 인해 오히려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에는 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유형으로 개인정보가 나타나고 그 처리 방식도 현재보다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동의제도를 기반으로 한 정보주체의 통제력

56)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박영사, 2016, 60-61면.

을 강조하는 기본권으로는 개인정보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권리의 특성을 고려하면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데이터 이동권을 도입하는 것이 개별법에 도입하는 것보다 헌법 제10조·제17조·제37조 제1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및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데이터는 핵심 자원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은 데이터의 가치를 공유할 수 없고 실질적인 통제권이 기업에 있어 데이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데이터의 주인인 정보주체에게 데이터 관리 권한을 돌려주는 데이터 이동권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하여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⁵⁷⁾

III. 개별법 규율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달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면 개별법으로 규율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상 데이터 이동권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EU GDPR 제4조 제2호에 따르면 ‘처리’란 자동화된 수단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집, 기록, 편집, 구성, 저장, 가공 또는 변경, 검색, 참조, 사용, 전송, 유포 또는 기타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공개, 정렬 또는 조합, 제한, 삭제 또는 파기와 같이 개인정보 또

57) 주 12, 1-5; 조수영, “개인정보보호법과 EU의 GDPR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61집, 2018, 142면; 정한신,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헌법적 연구”, 부산대학교, 2015, 210-211면; 정원준,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적 고찰”, 고려대학교, 2019, 191면.

는 개인정보의 집합물에 대하여 수행되는 모든 작업 또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 GDPR 제6조에서는 ‘처리’는 (a) 정보주체가 하나 이상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경우, (b) 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또는 계약 체결 전에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처리가 필요한 경우, (c)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의 준수를 위하여 처리가 필요한 경우, (d) 정보주체 또는 다른 자연인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리가 필요한 경우, (e) 공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직무의 실행을 위하여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여된 공적 권한의 행사에 처리가 필요한 경우, (f) 개인정보처리자나 제3자가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가 필요한 경우(다만, 정보주체가 아동인 경우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하는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기본권과 자유가 해당 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에만 적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EU GDPR과 체계 상 차이를 보인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서는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에서 수집·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서 제공을 규정하는 등 EU GDPR과는 다른 구조를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항 제1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1항 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1항 제3호),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제1항 제4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항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1항 제6호)에 한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 제2항 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제1항 제2호)에 한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원칙적으로 목적 외 이용·제공을 금지하되(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6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8호),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9호)이다.

위에서 언급한 규정을 토대로 살펴보면 EU GDPR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의 이행, 처리가 자동화된 수단으로 시행되는 경우에 한해서 데이터 이동

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EU GDPR 제6조에서 규정하는 처리 적법성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EU GDPR 제6조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나 계약의 이행 요건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가 자동화된 수단으로 시행되는 경우는 정보주체 또는 다른 자연인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 해석 상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와 제17조 및 제18조 등에 따른 수집·이용, 제공 근거 규정에서는 EU GDPR에서 인정하는 데이터 이동권의 행사 요건 중 동의를 제외하고는 데이터 이동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보주체의 데이터 제공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데이터 이동권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또는 제18조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계약의 이행이나 처리가 자동화된 수단으로 시행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권리 중 하나인 열람청구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본은 EU GDPR에서 규정하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고 널리 이용되는 구조화된 포맷’이 아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정하는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람청구권과 데이터 이동권은 본질적으로 다른 권리이므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상 데이터 이동권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⁵⁸⁾

미국의 CCPA의 경우 정보주체가 데이터 접근권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열람청구권은 정보주체가 직접 제공한 개인정보 이외에 제3자 또는 공개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자가 생산한 개인정보(신용평가, 인사평가, 거래 내역, 진료기록 등), 서비스 제공 등의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개인정보

58) 주 5, 303-304면.

(수발신내역, 입출기록, 쿠키, 로그기록 등) 등도 열람 청구의 대상이 된다.⁵⁹⁾

즉, EU GDPR, 미국 CCPA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 이동권 대상의 범위보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열람청구권 대상의 범위가 넓어 열람청구권으로 데이터 이동권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⁶⁰⁾

둘째, 데이터 이동권이 기본권적 성격을 가진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과 함께 정보주체에게 보장해야 할 권리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EU GDPR 전문 제68항을 살펴보면 정보주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이동권을 신설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EU 제29조 작업반(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에서 작성한 데이터 이동권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에서는 데이터 이동권을 통해 EU 역내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지원하고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들의 변화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 추진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U GDPR의 법원(法源)으로 볼 수 있는 유럽연합운영조약(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6조 제1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회원국들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보호와 관련된 규정과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EU GDPR 제1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자연인의 보호에 관련된 규정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련된 규정을 정한다고 입법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

59)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16, 306-307면.

60) 주 5, 304면.

2항에서 자연인의 기본권과 자유 및 특히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그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규정하는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EU 내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자연인의 보호에 관계된 이유로 제한되거나 금지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EU GDPR에서는 자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EU GDPR에서 신설된 데이터 이동권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토대로 도입된 권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임을 개정 이유로 하고 있는 2020년 8월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법의 목적은 변함이 없다. 근본적으로 법의 목적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데이터 이동권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기본권적 성격을 갖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과 함께 정보주체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 도입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셋째, 데이터 이동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유형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가 받은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간 개인정보를 전송하고 받는 경우 모두 데이터 이동권의 실현 과정에서 해킹 등을 통해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또는 노출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데이터 이동권 제도 운영을 위해서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기존의 개인정보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에는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는 데이터 이동권 도입을 통해 건강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EU GDPR의 입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EU GDPR에서는 데이터 이동권 실현을 위해서 기계적 판독이 가능한 형식(machine-readable and interoperable format)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ICT 환경 변화 및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 유형 중에서 웹문서, 전자우편, 이미지, 동영상, 음성 등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informal data)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및 데이터 경제 시대에 비정형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보다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계적 판독이 가능한 형식을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요건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입법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데이터 이동권과 같은 새로운 권리를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일반법에 도입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분야별로 개별법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권리를 설정한 후에 이를 포괄하는 일반법에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 흐름인 점, EU 역시 데이터 이동권과 관련된 사례 및 판례 등이 확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이 개별법에 데이터 이동권을 도입한 후 경과를 지켜본 후에 일반법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⁶¹⁾

61) 주 5, 326면; 신승현,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정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2019, 92면; 김서안·이인호, “유럽연합과 미국에서의 개인정보이동권 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중앙법학 제21집 제4호, 2019, 302면.

제2절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권리

1. 도입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발전은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효율성 제고 및 자원 절감 등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할 수 있다. 예컨대, 정보주체는 매우 복잡한 알고리즘의 추론으로 인하여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과정을 완전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고,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정보주체를 특정한 범주로 고정시켜 제품이나 서비스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확한 예측으로 부당한 차별까지 이어질 수 있다.⁶²⁾ EU GDPR 전문 제71항⁶³⁾에서

62)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Guidelines on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and profiling for the purposes of regulation, 2017, pp.5-6.

63) 정보주체는 자동처리에만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조치를 포함할 수 있고, 온라인 신용신청에 대한 자동적 거절이나 인적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전자채용 관행 등 정보주체에게 법적인 영향이나 이에 상응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적용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처리는, 개인의 개인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모든 형태의 개인 정보의 자동처리로 구성된 '프로파일링'을 포함하며, 특히 정보주체의 업무능력, 경제적 상황, 건강, 개인의 성향이나 관심사, 신뢰성 또는 행동, 위치 또는 움직임과 관련된 측면을 분석하고 예측하며, 정보주체에게 법적인 영향이나 이에 상응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하다. 그러나 프로파일링 등 이러한 처리에 근거한 의사결정은, 정보처리자가 적용받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의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인가하는 경우 허용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사기 및 탈세의 감시목적과 이 법 및 유럽연합 기구와 국가 감시기구의 기준 및 권고책에 따른 예방 목적이 포함되며, 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보안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자 간의 계약의 체결이나 수행에 필요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명백한 동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처리는 정보주체에게 구체적인 통지전달, 인적개입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 의사를 표현할

는 이러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다루고 있으며 제22조에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를 신설하면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였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제20대 국회에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를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2018년에 진선미 의원, 이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를 규정하였다.⁶⁴⁾

비록 제20대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실패하며 법안은 자동 폐기의 수순을 밟게 되었으나, 4차 산업혁명 및 데이터 경제 시대에 더욱 활성화 될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와 프로파일링 관련 산업 활성화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의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리, 이러한 평가 이후 도달한 결정에 대한 설명을 획득할 권리,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적용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 아동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주체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특정한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정보처리자는 프로파일링을 위한 적절한 수학적 또는 통계적 절차를 사용해야하며, 특히 개인정보의 부정확함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를 시정하고 오류의 위험성의 최소화를 보장하기 위해 기술 및 관리조치가 이행되어야하며,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관련된 잠재적 위험요소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특히 개인의 인종 또는 민족출신, 정견, 종교나 신념, 노동조합의 가입여부, 유전적 또는 건강상태나 성적취향에 근거하여 개인에 미치는 차별을 방지하는 방식이나 이러한 영향을 지니는 조치를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호해야 한다. 자동적 의사결정과 특정범주의 개인정보에 근거한 프로파일링은 특정 조건에 한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64) 진선미 의원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 이재정 의원은 프로파일링에 대한 권리를 각각 규정하였다.

II. 일반법 규율방안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EU GDPR과 같이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처리정지요구권을 통해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우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EU GDPR에서 규정하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의 예외적 허용 사유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처리정지요구권의 거절 사유가 유사하기 때문에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상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⁶⁵⁾

그러나 해석 상 인정할 수 있는 권리는 법 적용 대상인 수범자에게 혼란을 주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특히,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이 인간의 개입을 배제

65) 주 5, 259면.

하고 개인의 중요한 법적 지위를 확정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자율성을 존엄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며⁶⁶⁾ 급격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발전으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이 활발해지면 정보주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처리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불합리한 차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EU GDPR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EU에서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이익의 증대와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정보주체에게 가해지는 리스크에 대한 균형을 추구하고자 노력하였다. 예컨대, 민감정보와 아동정보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데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할 경우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보주체의 실질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측면에서도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⁶⁷⁾

III. 개별법 규율방안

빅데이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등 데이터 보관, 분석 및 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이전보다 쉽게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고 더욱 정교하면서 광범

6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방안」, 2017, 122면.

67) 박노형·정명현, “EU GDPR상 프로파일링 규정의 법적 분석”, 고려대학교, 2018, 310-311면; 정한신,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헌법적 연구”, 부산대학교, 2015, 207-210면; 주 48, 123면.

위한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을 통하여 정보주체 입장에서 불필요한 정보 및 소모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줄이고 정보주체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순기능도 존재한다. 이미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은 온라인 광고, 다이렉트 마케팅, 고용 및 채용, 검색 및 콘텐츠 추천, 정보보안,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⁶⁸⁾

<표 5> 프로파일링 유형별 사례⁶⁹⁾

분야	유형 ①	유형 ②	유형 ③	유형 ④
온라인 광고	고객의 연령, 성별, 검색 이력 등을 분석하여 상품 선호도, 관심 상품 추정	추정 결과에 부합하는 광고군이 제시되면 이 중에서 광고 선정·송출	추정 결과에 부합하는 광고를 자동으로 송출	웹페이지 내 특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광고 표시
검색·콘텐츠 추천	이용자의 검색 기록, 위치 정보를 분석하여 검색 의도 추정	추정 결과를 최종 검색 결과 도출 시 반영	추정 결과에 부합하는 검색 결과를 자동으로 도출	고객이 특정 검색어 입력 시 일정 콘텐츠 추천 목록 자동 표시
고용	지원자의 인행, 태도 등을 분석하여 응시자 특성 추정	추정 결과를 지원자 면접 시 반영하여 지원자 채용 여부 최종 결정	추정 결과만으로 지원자 채용 여부 자동 결정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한 자기소개서가 최소 글자 수에 미달한 지원자 자동 탈락
정보보안	개별 이용자의 금융·비금융 활동정보 등을 분석하여 특정 거래의 부정행위 여부 추정	부정행위 추정 시 경고를 발송하고 거래 거절·정지 여부 최종 결정	부정행위 추정 시 자동적으로 거래 거절·정지	특정 장소에서 신용카드 사용 감지된 경우 자동 거래 정지
금융	고객의 금융거래 실적, 체납 이력 등을 분석하여 신용등급 산출	신용등급을 반영하여 이자를 최종 결정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신청 자동 거절	관련 서류 미비 시 대출 신청 자동 거절
자동투자	투자자 질의응답 등을 토대로 투자자 성향 분석 및 분류	고객의 투자 성향 및 분류에 따라 복수의 투자 상품이 추천되면 이 중에서 투자 상품 결정	고객의 투자 성향 및 분류에 따라 자동 투자 실행	투자수익 예치금을 일정 기간 보유 시 자동으로 예금계좌로 이체

68)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처리에서의 프로파일링 사례집」, 2020, 2면.

69) 주 67, 5면.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이 활용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해당 분야와 관련된 법령에 보장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 분야에서는 2020년 1월 개정되어 8월 시행 예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개인 신용평가 및 일정한 금융거래에 대해 정보주체의 대응권을 보장하였다. 즉, 정보주체에게 신용등급 또는 점수에 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폭넓게 인정하였으며, 빅데이터 분석 등 자동화된 개인 평가를 기초로 하는 금융거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였다. 금융 분야 외에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법을 통해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의 도입이 정보주체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9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이 제공하는 취향, 행동패턴, 구매 성향 등을 근거로 개인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의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42%만이 제공 의사가 있음을 밝혔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상당 수의 정보주체가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 자체를 반대하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의 도입하는 것은 정보주체가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후 논의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림 11> 개인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의사⁷⁰⁾

개인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의사



제공 의사 있음
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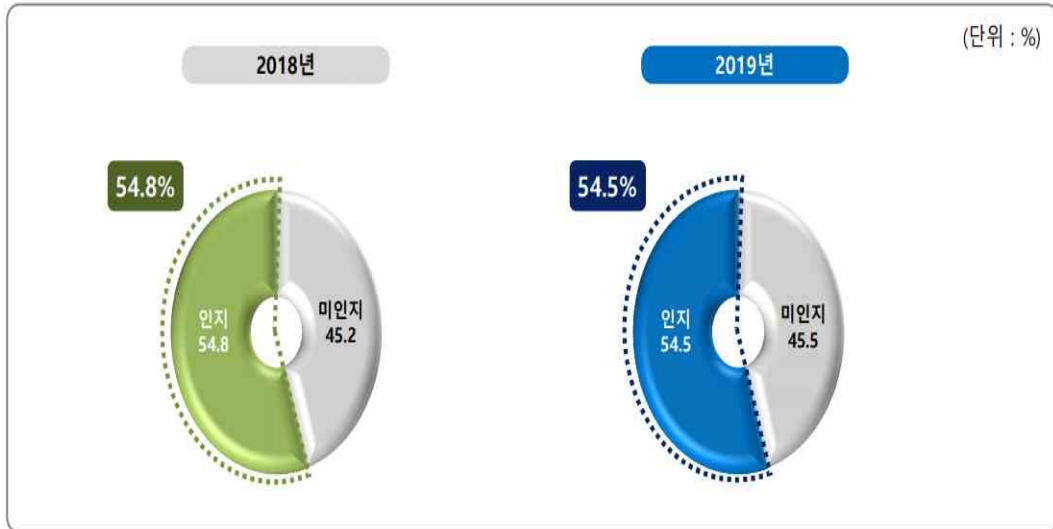
개인화 서비스란?

개인이 제공하는 취향, 행동패턴, 구매 성향 등을 근거로
개인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2019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을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이 54.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정보주체가 기존의 권리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권리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다.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제고하는 정책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70) 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 「2019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2020, 4면.

<그림 12>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인지 여부⁷¹⁾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만으로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과도하게 프로파일링 관련 기술을 규제한다면, 이와 관련된 신기술 및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⁷²⁾ 프로파일링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장려하면서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2020년 1월 개정되어 8월 시행 예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권리를 도입하였듯이 우선 개별법에서 분야별로 이를 도입한 후 사회 각 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71) 주 69, 126면

72) 주 34, 175면.

제3절 소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보장 및 데이터 기반 산업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데이터 이동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응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채택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데이터 활용 정책의 실현이 쉽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2016년 부처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지만 시민단체에 고발을 당하는 등 빅데이터 활성화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결국 앞서 살펴본대로 데이터 이동 체계 구축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과 안전성 문제, 우리나라 법제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데이터 이동권을 도입하기 보다는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이 우선 개별 분야에 데이터 이동권을 도입하여 추이를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신용평가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금융 분야,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분야, 복지혜택 지원요건을 결정하는 복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를 일반법에 도입하여 명문화한다면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일반법에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을 반대할 권리를 도입한 EU에서도 GDPR 시행 이후 구체적인 적용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EU를 중심으로 해외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공론화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친 후 일반법에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을 반대할 권리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중한 접근과 검토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데이터 이동권 및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를 도입하게 된다면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과 EU GDPR과의 차이로 인하여 국내 개인정보처리자가 역차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즉, 규제의 내용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여 국내 개인정보처리자가 해외 개인정보처리자보다 과도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입법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 GDPR 적정성 결정 통과를 위하여 EU GDPR과 동등한 수준의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EU GDPR 간 상이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 이동권 및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에 대해서도 EU 집행위로부터 질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EU GDPR 적정성 결정 통과를 위해서 우선 EU GDPR과 유사한 형태로 입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를 고려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6>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법	개정안
제2조(정의) (생략) 1. ~ 2.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신설>	2의1. “프로파일링”이란 개인의 업무 성과, 경제 상황, 건강, 취향, 관심사, 행동, 위치 또는 이동 등을 분석·평가하거나 예측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를 말한다.
<신설>	2의2. “자동화된 의사결정”이란 자동적

	처리에만 의존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생략) 1. ~ 2. (생략)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생략) <신설> 5. (생략)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 및 이동----- 4. (현행과 같음) 4의2.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 5. (현행과 같음)
제3조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 ⑤ ----- -----, -----, 이동권 -----.
<신설>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이동) ①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신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했던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컴퓨터가 읽을 수 있고 널리 이용되는 구조화된 형식으로 받을 권리를 가지며, 위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아무런 장애 없이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가 동의 또는 계약에 의한 경우 2.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② 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동권을 행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서 제3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바로 전송되게 할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의 권리의 행사는 제36조 삭제권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권리는 공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나 개인정보처리

	<p>자에게 부여된 공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④ 제1항의 권리는 제3자의 권리와 자유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37조의2(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 ① 정보주체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하여 자신에 관한 법적 효력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반대를 요구할 수 있다.</p>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반대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따라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반대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3.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③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 및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p> <p>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p>

제5장 결론

2020년 1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에 따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국회, 산업계의 노력 끝에 데이터 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데이터 3법 통과 이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만 법 개정이 추진되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인 방안 부재의 아쉬움을 나타내며 데이터 이동권,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데이터 이동권의 경우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법제 특성, 권리의 성격, 데이터 전송에 따른 안전성,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미치는 부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대응권의 도입의 경우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처리자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데이터 이동권 및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다.

향후 데이터 활용을 통한 다양한 신산업이 육성되고 발전할 것이라는 예상에는 큰 이견이 없다. 데이터 이동권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화의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데이터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의 문제, 데이터 이동 체계 구축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우리나라 법제 특성 등을 고려하면 당장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우선 개별법의 개정으로 금융, 의료 분야 등에 도입한

다음 사회적 공론화를 포함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권리의 경우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에 대한 보호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를 도입하게 된다면 프로파일링 관련 산업이 가져올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감소시키고 해당 산업 육성을 위축시키는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 이동권과 마찬가지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 역시 개별 분야에 우선 도입한 후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고려하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EU GDPR의 데이터 이동권 및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는 개별법 개정을 통해 분야별로 우선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01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정비방안」, 201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방안」, 201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DPR 발효에 따른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입법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01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 「2019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2020.
- 고학수·임용 편, 「데이터오너십」, 박영사, 2019.
-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박영사, 2016.
- 김상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 박노형 외 8인, 「EU 개인정보보호법」, 박영사, 2017.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처리에서의 프로파일링 사례집」, 2020.
- 이대희 외 4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세창출판사, 2018.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8 데이터산업백서 제2부」, 2018.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국내개인데이터 이용 환경 분석 연구보고서」, 2017.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 이동권 도입 방안 연구」, 2019.
- 한국인터넷진흥원, 「프로파일링 관련 기술 동향 분석 및 개인정보 정책 방안

연구」, 2018.

함인선, 「EU개인정보보호법」, 마로니에, 2016.

함인선, 「EU개인정보판례」, 마로니에, 2018.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우리 기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북」, 2018.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16.

[논문]

고수윤·이수안·손경호, “데이터이동권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6집 제2호, 2020.

권건보, “정보접근권의 실효적 보장에 관한 고찰”, 미국헌법연구 제29권 제2호, 2018.

권건보·김일환, “지능정보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효적 보장방안”, 중앙법학 제30권 제2호, 2019.

김서안·이인호, “유럽연합과 미국에서의 개인정보이동권 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미국헌법연구 제21집 제4호, 2019.

박노형·정명현, “EU GDPR상 프로파일링 규정의 법적 분석”, 안암법학 제56권0호, 2018.

박현일, “정보이동권의 국내 도입 방안”, 경희법학 제52권 제3호, 2017.

손영화·손수진, “EU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방안”, 比較私法 제26권 제1호, 2019.

손형섭, “일본에서의 디지털 기본권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2018.

신승현,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정방안 연구”, 국민대학

- 교 법무대학원, 2019.
- 윤수영,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소비자 데이터 주권에 대한 고찰 : EU GDPR 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제29권 제5호, 2018.
- 이성엽, “개인정보 개념의 차등화와 개인정보이동권의 대상에 관한 연구”,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2호, 2019.
- 전아연·지성우, “EU개인정보보호규정 상 정보이동권의 실효성과 중국 및 한국에서의 전망”, 토지공법연구 제86집, 2019.
- 정원준,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적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9.
- 정한신,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헌법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5.
- 조상명, “지능정보사회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0.
- 조수영, “개인정보보호법과 EU의 GDPR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61집, 2018.
- 고환경·손경민·주성환, “정보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산업”, BFL 제93호, 2019.

[기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과기정통부, 의료·금융·공공 등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8개 선정, 2020.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 2018.
-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12개 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2018.
- 차현아, 유럽 GDPR에 막힌 한국 IT업계, “데이터 이전은 비현실적”한 목소리

리, IT조선, 2018.

한국인터넷진흥원, 해외 개인정보보호동향 보고서 2018년 1월 2주.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2018.

한국행정연구원, 데이터 3법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2020.

[국외문헌]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Guidelines 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2017.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Guidelines on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and profiling for the purposes of regulation, 2017.

ABSTRACT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right to data portability and profiling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Lim, Yong Hyun

Dept. of Law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n this paper, I reviewed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introduc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EU GDPR's right to data portability and profiling.

To this end, I analyzed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rights, purpose of legislation. Also, I comparatively analyzed legislation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Republic of Korea.

As a result, Considering the security problems that may occur due to the movement of data, the burden of the company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data movement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nto individual fields. And the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lso, It is important to prepare a means of protection for the infringement of data subject's interests that may occur due to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including profiling. But, There is a concern that the data economy will be disrupted, by reducing the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of profiling-related industries and discouraging the development of those indust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right not to be subject to a decision based solely on automated processing, including profiling, into individual fields. And the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e end, Considering that data economy revitalization is an inevitable trend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pursue a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data subjects' interests and the industrial development.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each right in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Key words : EU GDP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Right to data portability, Right not to be subject to a decision based solely on automated processing, including profiling.